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이정해 소유물건(2025타경8161)

의뢰인: 대구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신우탁

감정평가서번호: 250528-A668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유원감정평가사사무소

(부동산)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 정 평 가 사
정 철 유 (인)

감정평가액	오천만원정 (₩50,000,000.-)					
의뢰인	대구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신우탁	감정평가 목 적	법원경매			
제출처	대구지방법원 경매4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이정해 (2025타경8161)	감정평가 조 건	-			
목록표시 근 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 사 기 간	작 성 일		
기 타 참고사항	-	2025.06.30	2025.06.16 ~ 2025.06.30	2025.06.30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아파트	1 1개호x- 2	아파트	1 1개호x- 2	-	50,000,000
		이	하	여	백	
	합 계				₩50,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소 재 지	대구광역시 북구 감단동 887-8					
건 물 명	유성청구아파트 102동 8층 818호					
기 호	구 분	지 목 및 용 도	면 적 (㎡)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1.	1동의 건물의 표시					
	대구광역시 북구 감단동 887-8					
	유성청구아파트 제102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아파트 제102동					
	1층		982.04			
	2층		956.12			
	3층		956.12			
	4층		956.12			
	5층		956.12			
	6층		956.12			
	7층		956.12			
	8층		956.12			
	9층		956.12			
	10층		956.12			
	11층		956.12			
	12층		956.12			
	13층		956.12			
	14층		956.12			
	15층		956.12			
	노인정, 기계실		728			
	관리사무소		99.72			
	옥외변소		8.58			
	옥외변소(3개동)		6			
	오수정화조		16.50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소 재 지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 887-8					
건 물 명	유성청구아파트 102동 8층 818호					
기 호	구 분	지 목 및 용 도	면 적 (㎡)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8층 818호 철근콘크리트조	대	1 47.49x-	23.745	50,000,000	(이정해 지분) 매각지분 전 소유권 지분 중 2분의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 887-8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 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1.		2 33,726 33,726분의 22.99 x 1/2	11.495		
	합 계			토지·건물 토 지 : 건 물 :	배분내역 30,000,000 20,000,000	
		이	하	여	₩50,000,000.-	백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1.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 887-8번지 소재 유성청구아파트 제102동 제8층 제818호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의 경매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입니다.

2. 평가대상물건

기호	종류	소재지	건물명/ 동/층/호수	면적(㎡)	
1	구분건물 아파트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 887-8	유성청구아파트 102동 8층 818호	전유 :	47.49 중 1/2 지분
				대지 :	22.99 중 1/2 지분

3.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 조건

1)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였습니다.

2) 감정평가 조건

본건은 평가에 있어 별도의 조건은 전제하지 않고 평가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4. 기준시점

본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가격조사완료 일인 2025년 06월 30일로 하였습니다.

5. 감정평가근거 및 감정평가방법

1) 감정평가근거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및 감정평가에 관한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습니다.

2) 대상물건의 감정평가방법

(1) 주된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였습니다.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의미합니다.

(2) 시산가액의 조정 및 감정평가가액 결정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 결정을 위하여서는 하나 이상의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함이 원칙이나, 구분건물의 특성상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 판단되는바, 시산가액 비교에 따른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되, 인근 유사부동산의 거래사례 및 가격수준, 감정평가전례 등 참고자료를 통해 합리성을 검토하여 감정평가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6. 기타사항

- 1) 귀 평가명령에 의한 토지부분과 건물부분의 배분가액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및 한국부동산연구원에서 제시하는 토지·건물 배분비율(집합건물의 토지·건물 배분비율표)을 참조하되, 대상물건의 가격형성상 제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정평가명세표에 기재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본건은 현장조사시 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대장 및 인근 동유형 구분건물의 표준적이고 통상적인 마감상태 등을 참작하고, 외부관찰 및 현지 조사된 내용 등을 기초로 평가하였습니다.

- 3) 본건은 공유지분 부동산에 대한 지분평가로서 해당 평가대상 지분에 대한 위치 확인이 곤란하여 대상 부동산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면적사정은 귀 제시 지분면적 비율에 의하였습니다.

II. 대상물건 개요

소재지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 887-8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115 (검단동)		
건물명/동/층/호수	유성청구아파트 102동 8층 818호		
주용도	아파트	사용승인일	1992.8.14
주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15층
면적(㎡)	전유	대지	
기호1	47.49 중 1/2 지분	22.99 중 1/2 지분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Ⅲ.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1. 거래사례의 선정

1) 비교 거래사례

기호	소재지	동/층/호수	사용 승인월	전유면적 (㎡)	거래금액 (원)	거래시점
1	검단동 887-8	유성청구아파트 102동 11층 110□호	1992.08	47.49	100,000,000	2025.05.02

2) 거래사례 선정이유

대상물건의 인근지역에 소재하고 제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하며,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판단되는 상기의 거래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2. 사정보정

1) 개요

사정보정이란,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2) 사정보정치 결정

결정의견	보정치
상기 비교 거래사례는 거래 당사자간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 동기가 반영되지 않으며, 정상적이고 적정한 거래사례로 판단되는바, 별도의 사정보정 요인은 없습니다.	1.00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3. 시점수정

1) 개요

본건 평가에서 시점수정은 한국부동산원이 조사 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의 유형별 가격지수 중 본건과 물적특성 및 지리적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가격지수를 활용하여 시점수정치를 산정하였습니다.

2) 시점수정치 결정

가격지수	대구광역시 북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시점수정치	0.99397
산정내역	아파트 지역 : 대구광역시 북구(25.05.02~25.06.30) 거래시점 : 2025.05.02, 2025년04월 지수를 적용 함 기준시점 : 2025.06.30, 2025년05월 지수를 적용 함 2025.05.02 매매 가격지수 (적용:2025년04월) : 99.5 2025.06.30 매매 가격지수 (적용:2025년05월) : 98.9 시점수정치 : $98.9/99.5 \approx 0.99397$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4. 가치형성요인 비교

1) 가치형성요인 비교항목

구분	항목
단지 외부 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 차량이용의 편리성
	도심지 및 상업, 업무시설과의 접근성
	교육시설 등의 배치,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과의 배치
	자연환경(조망, 풍치, 경관 등) 등
단지 내부 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단지내 총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내 면적구성(대형, 중형, 소형)
	단지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등
호별 요인	층별 효용,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사용권의 크기
	내부 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등
기타 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2)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구분	가치형성요인				누계치
	외부요인	내부요인	호별요인	기타요인	
기호1	1.000	1.000	1.000	1.000	1.000
※ 검토의견 : 본건은 거래사례와 제반 개별요인에서 대등합니다.					

5.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산정

기호	비교사례 거래금액(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 요인비교	전유면적비교	시산가액(원)
1	100,000,000	1.00	0.99397	1.000	$\frac{23.745}{47.49}$	50,000,000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IV. 감정평가액결정 참고자료

1. 인근지역 유사부동산 거래사례

[자료 : 감정평가정보체계 등]

기호	소재지	동/층/호수	사용 승인월	전유면적 (㎡)	거래금액 (원)	거래시점
1	검단동 887-8	유성청구아파트 102동 11층 110□호	1992.08	47.49	100,000,000	2025.05.02
2	검단동 887-8	유성청구아파트 102동 3층 31□호	1992.08	47.49	93,000,000	2025.05.02

2. 인근지역 유사부동산 가격수준

가격수준(원)
90,000,000 ~ 110,000,000

3. 인근지역 유사부동산 평가전례

[자료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 등]

기호	소재지	동/층/호수	사용 승인월	전유면적 (㎡)	평가가액 (원)	기준시점	평가 목적
1	검단동 887-8	유성청구아파트 105동 15층 150□호	1992.08	47.49	130,000,000	2023.01.16	경매 평가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V.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의견

1. 감정평가액 결정

기호	감정평가액 (원)	비고 [토지건물가액배분(원)]
1	50,000,000	토지가액 : 30,000,000 건물가액 : 20,000,000
합계	50,000,000	

2. 결정의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 산출된 시산가액은 인근 유사부동산의 거래사례 및 가격수준, 평가전례 등 참고 자료에 의하여 그 합리성이 인정되고, 감정평가 목적 등 제반 사항을 종합 고려할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기준으로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대구광역시 북구 감단동 소재 감단네거리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공장,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2) 교통상황

본건 인근 교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등을 종합할때,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내 8층 818호로서,
 사용승인일 : 1992.08.14
 외 벽 : 몰탈위페인트 등 마감.
 내 벽 : 벽지 및 타일 등 마감.
 창 호 : 새시 창호입니다.

(4) 이용상태

아파트 1개 호수 입니다.

(5)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 있습니다.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등

남서측으로 왕복 6~7차선 포장도로, 남동측 및 북동측으로 왕복 4차선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대로1류(폭 35m~40m)(저축),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2022-12-12)(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29)<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지방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9)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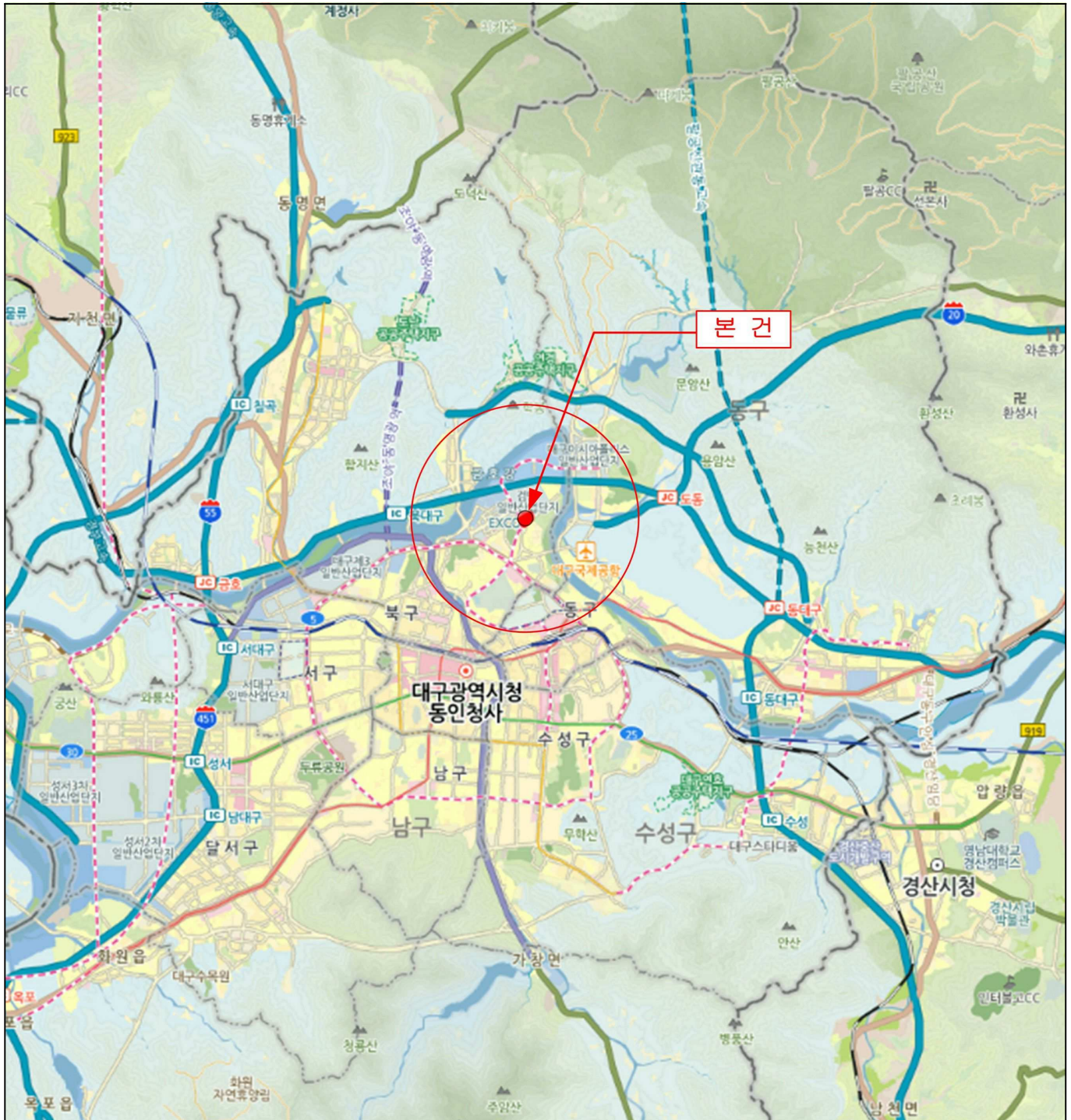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광역 위치도



소재지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 887-8 유성청구아파트 102동 8층 818호



위치도



소재지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 887-8 유성청구아파트 102동 8층 818호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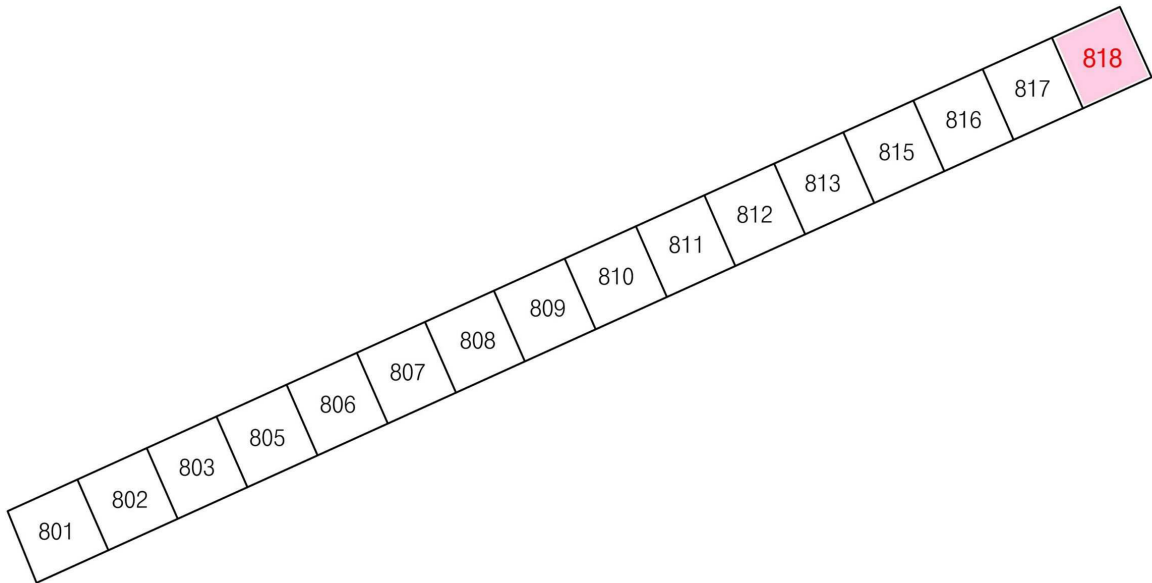
내 부 구조 도



소재지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 887-8 유성청구아파트 102동 8층 818호

4



<본건 : 유성청구아파트 102동 8층 818호>

사 진 용 지



사 진 용 지

